

# 「2025년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안내문

##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2025. 5. 30.(00:00) ~ 2026. 5. 29.(24:00)
- 보험료: 아산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아산시 시민 전체 자동 가입

\*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보험가입 혜택

구 분	보 상 내 용	보상금액
상해 사망 (교통상해 제외)	아산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500만원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아산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전연령 적용)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4주(28일)이상 진단시: 15만원한도 - 4주(28일) 이상 진단시: 10만원 - 6주(42일) 이상 진단시: 15만원
	아산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8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만65세 이상만 적용)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8주(56일)이상 진단시: 5만원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아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아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아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아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아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1,500만원

구 분	보 상 내 용	보상금액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아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택시·전세버스 제외)	아산시민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100만원 한도 (1급-13급/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아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1,5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아산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1,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아산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100만원 (수술 1회당/ 심재성2도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아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2,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별 지급기준 적용)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아산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0급/ 부상등급별 지급기준 적용)
개 물림사고 상해 치료비	아산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20만원 한도

## ◆ 보장범위

### ○ 상해 사망 (교통상해 제외)

-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4주이상)을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사고당1회)

※ 추가진단은 제외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 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 자연재해는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  
※ 열사병 및 일사병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상 T67.0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 을 말함.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 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포함)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 버스 [택시(일반, 개인), 전세버스, 렌터카 제외]
    4. 여객수송용 선박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부상등급	가입금액	부상등급	가입금액
1급~3급	100만원	4급~6급	50만원
7급~9급	30만원	10급~11급	20만원
12급~13급	10만원	14급	해당없음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 보험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 ▶ 보험기간 중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  
※ 농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함.

○ 화상수술비

-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 수술비 지급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군수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 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 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 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0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 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6급	보험가입금액의 50%
2급	보험가입금액의 90%	7급	보험가입금액의 40%
3급	보험가입금액의 80%	8급	보험가입금액의 30%
4급	보험가입금액의 70%	9급	보험가입금액의 20%
5급	보험가입금액의 6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10%

#### ○ 개 물림사고 상해치료비

- ▶ 보험기간 중에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인당보상한도 : 200,000원 한도 총보상한도 : 20,000,000원 한도

※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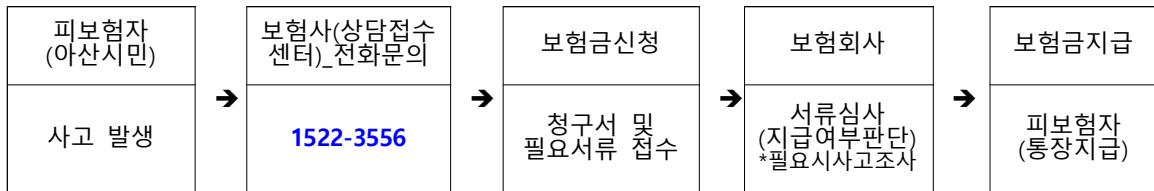
※ 보험금 지급제한 등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 ◆ 보험금청구

####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상담접수센터)에 문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 기타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 문의 :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컨소시엄)

 1522-3556

**FAX 0507-774-0662**

##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 사회재난, 자연재해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화상수술비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서류 (예: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 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명기), 수술명, 수술일자포함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① 공통서류 ② 상해사고 확인서류_초진진료기록지 등 ③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
개물림사고 상해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개물림사고 확인서류 _ 초진진료기록지, 응급실 기록지 등 ③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 ◆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상담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및 접수센터(보험사 상담접수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스 : 0507-774-0662